

[별표 2]

공통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 가점은 최대 5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녹색매장 지정,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건축 인증, ISO 14001 인증, 탄소발자국 인증, 물발자국 인증, 에코라벨 인증 등 녹색경영 관련 국내외 인증·지정·확인을 받은 경우	각 3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상한 경우	5점
온실가스·에너지, 자원·폐기물, 화학물질, 녹색구매, 녹색금융 등 녹색경영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	5점
협력사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5점
자원순환 성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또는 기반시설 구축한 경우	5점
환경기술개발,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나 환경보전행사를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경우	5점
기타 획기적인 청정기술개발·적용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서 제8조의 심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5점

※ 사업장 단위로 가점 여부를 판단하되, 기업 단위 활동의 경우에도 특정 사업장이 충분한 기여를 했다고 심사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에 가점 부여 가능

2. 감점

- 감점은 각 항목별로 감점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별로 감점할 수 있으나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30점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0점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조의7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시행령 제22조의7의 인용법령 및 조문 이외의 위반, 법 시행령 제22조의7 단서 해당 위반)	20점
제7조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점
제12조에 따른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과 녹색경영계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0점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점
제17조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점

※ 감점기간은 신규 지정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이고, 재지정인 경우에는 지정기간 동안 임